2010 규정심의회 결의안에 대한 RI 이사회 및 재단 관리위원회의 결정

RI 정관 제 10 조 6 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규정심의회 종료 후 1 년 이내에 규정심의회 결의안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을 모든 지구총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 규정심의회는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결의안 이외에도 여러 안건들에 대한 심의 및 후속 조치를 취해 줄 것을 RI 이사회와 재단 관리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재단 관리위원회는 지난 10 월 회합에서 그리고 RI 이사회는 지난 6 월 및 11 월 회합에서 각기 관련 결의안과 안건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규정심의회와 관련된 RI 이사회 및 재단 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RI 세칙, 제 5.020 항에 따라, "이사회의 모든 회의록과 결정 사항은 회합일이나 결정 이후 60 일 이내 로타리 웹 사이트에 올려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웹 사이트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결의안 10-165 는 로타리의 제 2 모토인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 들인다"의 영문 표기를 "On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로 변경시켰습니다. 이 로타리 제 2 모토의 영문 표기는 이미 2010 년 7 월 1 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번호	결정

10-01 **클럽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 설치**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88)

결의안 내용: 신입회원들의 로타리 지식 향상, RI 및 재단 자원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리더십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규정심의회 결의안 10-01은 클럽 리더십 플랜이 추천하는 상임 위원회 이외에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다.

결정: RI 이사회에 "클럽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 설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01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이 결의안을 제출해 준 프랑스의 Lille-Europe 로타리클럽(제1670지구)에 감사한다;
2. 클럽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수 및 리더십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클럽에 권장한다;
3. 클럽 차기회장에게 클럽 연수 계획을 관장할 클럽 트레이너를 임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로타리 정책 규약 제8.090.1.항을 재확인한다.

10-05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념을 지지하는 입법안 제출 요청**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0)

결의안 내용: 2007년 6월로 종결된 "새모델 클럽 파일럿"은 유연성있는 출석 및 주회 규정의 적용이 로타리 멤버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규정심의회 결의안 10-05는 RI 이사회에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지해 줄 것과 동 파일럿 프로젝트의 결과를 반영하는 제정안을 2013 규정심의회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정 : RI 이사회에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의 개념을 지지하는 입법안 제출 요청"의 규정심의회 결의안 10-05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2001-07년 동안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스웨덴, Vänersborg-Aurora 로타리클럽(제2370지구)과 제2380지구에 감사한다;

2. 새모델 클럽 파일럿 프로젝트 클럽들이 2007 규정심의회에 10건 이상의 입법안을 제안했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2013 규정심의회에 새로운 입법안 제안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0-41 장애인들의 로타리클럽 가입을 위한 장애인 정책을 채택할 것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1)

결의안 내용: 규정심의회 결의안 10-41은 장애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서의 주회 개최 등 장애인들의 로타리 가입이 용이하도록 RI 이사회에게 "장애인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정: RI 이사회에 장애인들의 로타리 가입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41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장애인들의 로타리 회원 가입을 고려하는 대만, Taipei Dragon River 로타리클럽과 제3520지구에 감사한다;

2.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을 기준으로 클럽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RI 정관 또는 세칙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원 자격 조건을 부과하는 규정을 클럽 정관이나 기타 어디에도 둘 수 없다고 명시한 RI 세칙 제4.070.항을 재확인한다;

3. 클럽들에게 장애인들의 주회 참석이 용이하도록 적절히 지원할 것과 이들이 클럽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10-50 새로운 멤버십(위성클럽 회원)의 제안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2)

결의안 내용: 규정심의회 결의안 10-50은 RI 이사회에 새로운 회원 종류, 즉 "위성클럽 회원"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정: RI 이사회에 새로운 멤버십(위성클럽 회원)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50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위성클럽의 개념을 제안한 웨일즈, Cardiff 로타리클럽과 제1150지구에 감사한다;

2. 오는 2010년 11월 이사회 혹은 2011년 1월 이사회에서 '위성클럽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가이드가 검토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RI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3. 클럽들이 위성클럽들을 호스트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2013 규정심의회에 제안할 것에 동의한다.

10-59 각 지구는 적극적으로 클럽 홍보 활동에 참여할 것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9)

결의안 내용: 최근 RI가 로타리 공공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규정심의회 결의안 10-59는 지구가 클럽 홍보 활동에 있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로타리 공공 이미지 강화 및 인식 확대는 RI 전략 계획의 우선 순위의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켰으며, 추가 연수와 PR 보조금의 활용을 통해 지구가 홍보 활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정: 클럽 홍보 활동에 있어 지구가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59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RI 홍보 활동을 지원해 준 San Jose Sunrise 로타리클럽과 제5170지구에 감사한다;

2.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조치를 통해 클럽 홍보 활동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 PR 보조금의 광범위한 활용;

   나. 클럽들에게 홍보 관련 연수 제공;

   다. 지구대회에서 클럽의 홍보 업적 강조;

   라. 지구총재 공식 방문 시, 총재에게 홍보 관련 클럽 연차 보고서 제출;

3. 지구총재와 지구 홍보 위원장에게 상기 2, 나 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65 **지구총재에게 신입회원 연수회 개최를 권장할 것**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89)

결의안 내용: 로타리 멤버십의 질적 향상과 신입회원들의 로타리 지식 함양을 위해 규정심의회 결의안 10-65는 지구총재에 의한 신입회원 연수회를 개최하도록 제안하였다.

결정: RI 이사회가 지구총재에게 클럽 신입회원 연수회를 개최하도록 권장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65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이 결의안을 제출해 준 일본, 효고, Kakogawa-Heisei 로타리클럽과 제2680지구에 감사한다;

2. 클럽이 신입회원 연수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로타리 정책 규약 제5.040.1., 5.050.4., 5.050.5., 그리고 17.030.6.항에 명시되어 있음을 재확인한다;

3. 지구에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를 권장하고 있는 로타리 정책 규약 제20.010.항을 재확인한다.

10-69
10-70
10-73
10-76
10-78

각 이슈에 대한 성명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3)

결의안 내용: 2010 규정심의회는 특정 이슈에 대한 지원 성명서나 선언문 발표 또는 인식 제고 등을 요청하는 결의안들을 채택하였다. 사무총장은 특정 이슈들에 대한 선언문이나 성명서 발표는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RI의 홍보나 인식이 없이도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 각 로타리클럽들이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정: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을 RI 및 로타리재단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69 및 10-70; 세계평화를 위한 로타리안 선언문 채택을 요구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3; 환경 문제 인식 강화를 요구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6; 그리고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8 등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지뢰 희생자 구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 독일의 thanks the Rotary clubs of Hochschwarzwald 로타리클럽과 Waldshut-Säckingen 로타리클럽, 제1830지구 그리고 제1930 지구에 감사한다;

2. 세계 평화 지원을 위한 로타리 행사에 관심을 보인 제4150지구에 감사한다;

3.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결의안을 제출해 준 영국, Loddon Vale 로타리클럽과 제1090지구에 감사한다;

4.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미국, 캘리포니아,관련 결의안을 제출해 준 Del Mar 로타리클럽과 제5340지구에 감사한다;

5. RI 전략 계획의 우선 순위의 하나인"인도주의 봉사의 집중 및 확대"는 1) 청소년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 2) 로타리재단 6대 초점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한 봉사 강화를 지향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정 이슈에 대한 성명서나 선언문 발표와는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6. 이슈에 대한 성명서와 관련된 정책 채택을 위해 로타리 정책 규약에 제26.170.항을 다음과 같이 포함시킨다:

   26.150. 이슈에 대한 성명서
   전세계 로타리클럽의 연합체인 RI는 특정 이슈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한다는 정책에 따라 공식적인 찬반 성명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세계 평화 혹은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로타리의 의지는 연합체 자체의 선언문보다는 각 로타리클럽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더 잘 나타난다.

10-71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창설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4)

결의안 내용: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1은 세계 평화와 국제 선의의 대한 RI의 의지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RI의 새로운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무총장은 로타리 정책 규약 제40.030.항에 새로운 지침 프로그램의 채택 규정과 현재 이 프로그램을 지침 프로그램으로 채택할 수 있는 자원 부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무총장은 RI의 지원과 홍보 없이도 각 지구가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결정: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창설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1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평화 프로그램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캐나다, 브리티스콜롬비아. Parksville 로타리클럽과 Saskatoon North 로타리클럽 그리고 미국 미시간, Dearborn Heights 로타리클럽과 캐나다 온타리오, Woodstock-Oxford 로타리클럽, 제5020, 5020, 5550, 6400, 그리고 7080 지구에 감사한다;

2. 전세계 평화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지구에게 계속 대화를 촉구한 2008년 6월 이사회 결정 제259를 재확인한다;

3. 현재로서, '로타리 평화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창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10-75 재해 지역의 신속한 구호를 위해 셀터박스의 사용 확대 방안 개발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5)

결의안 내용: 자연 재해 지역에 가용 자원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나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5에 대해 이사회는 2007 규정심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이 심의되었으며 당시 현재의 재해 구호 기구로도 해당 재해 지역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으며, RI는 장기적인 재해 구호를 추진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정: 자연 재해 지역에 필요한 물자와 자원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의 개발을 촉구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75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자연 재해 구호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호주, 빅토리아 주, Somerville Tyabb 로타리클럽과 제9820지구에 감사한다;

2. 재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해 구호 활동을 위해 RI 재해 구호 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3. RI는 자연 재해 지역에 대해 장기적인 복구 노력을 지향하며 로타리안들에게 기존의 재해 구호 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권장한 2007년 11월 이사회 결정 제59를 재확인한다.

10-94 **얼리액트(EarlyAct) 클럽에 대한 공식 승인 요청**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6)

결의안 내용: 12세 미만 아동들의 시민적 자질 향상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규정심의회 결의안 10-94은 얼리액트(EarlyAct)를 공식 승인을 요청하였다. 사무국은 이러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상하고, 2008-09 인터랙트 위원장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사무총장은 응답을 보내온 인터랙트 위원장의 50%가 얼리액트 클럽의 창립을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정: 얼리액트(EarlyAct) 클럽에 대한 공식 승인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94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젊은 세대와 얼리액트에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캐나다, 온타리오 주, Cornwall Sunrise 로타리클럽과, 남아공, Empangeni 로타리클럽, 그리고 제7040지구 및 제9270지구에 감사한다;

2.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념을 연구하는데 동의하며, RI 프로그램으로서 명칭과 참가 연령 그리고 비용 등을 포함해 새로운 프로그램의 시행 가능성을 연구 조사하여 2010년 12월 이사회에 보고해 줄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10-102 **인너휠을 로타리의 소중한 봉사 파트너로 인정**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7)

결의안 내용: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02는 로타리안의 여성 가족들의 모임인 국제 인터휠(International Inner Wheel: IIW)이 전세계 로타리클럽에 조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로타리의 공식 봉사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로타리 정책 규약 제 36.030. 3항은 RI와 IIW의 봉사 목표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두 단체는 공식적으로 아무런 관계라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결정: 인너휠을 로타리의 소중한 봉사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02에 대해, RI 이사회는 IIW가 전세계 로타리클럽들과 연계하여 가치있는 공헌을 하고 있으며 인류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10-107
10-108
10-109
10-110
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규정심의회 결의안 (2010 년 10 월 재단 관리위원회 결정 12)

결의안 내용: 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07, 10-108, 10-109, 10-110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결정: 로타리 재단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규정심의회 10-107, 10-108,10-109, 10-110 등을 위임해 준 RI 이사회에 감사드린다;

2. 로타리재단 및 재단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안을 제안해 준 제안자들에게 감사한다;

3.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10, "로타리안의 파트너에게 재단 프로그램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에 대해, 재단의 새로운 보조금 모델인 미래 비전 계획에서는 로타리안 파트너가 해당 보조금의 수혜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을 경우 보조금을 수령 가능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4. 제안된 결의안 10-107, "결핵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에 대해,

   a. 폴리오플러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까지 다른 보건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강조한다;

   b. 미래 비전 계획 하에서 클럽과 지구는 결핵 퇴치를 위해 영향력이 있으며 지속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5. 제안된 결의안 10-108, "정신 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위한 기금 설립"에 대해

   a. 로타리안들은 미래 비전 계획 하에서 정신 질환의 원인 및 치료와 관련된 대학 차원에서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b. 로타리재단은 그러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직접 제공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6. 제안된 결의안 10-109, "영유아 사망률 감소 프로젝트 지원 특별 기금 계좌를 개설할 것"에 대해

   a. 로타리안들은 미래 비전 계획 하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지닌 영유아 사망률 감소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b. 로타리재단 영구기금 내에 미래 비전 계획의 6 대 초점 분야의 하나인 "모자 보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 기금"이 설립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10-182 **'1923년 사회봉사 성명서'의 첫 번째 원칙을 봉사 철학의 정의로 규정할 것**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198)

결의안 내용: RI 세칙 및 로타리 정책 규약에 기술되어 있는 "사회봉사 성명서"는1923 (세인트루이스) 국제대회에서 채택되었다.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82는 사회봉사 성명서의 첫 번째 원칙을 봉사 철학의 정의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정: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82, "1923년 사회봉사 성명서의 첫 번째 원칙을 봉사 철학의 정의로 채택해 줄 것"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로타리의 철학적 원리의 하나로 사회봉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 일본, 호카이도 Kushiro-North 로타리클럽과 제2500지구에 대해 감사한다;

2. 1923년 사회봉사 성명서에 정의된 봉사의 철학은 현재 절차 요람과 로타리 정책 규약에 포함되어 있다.

10-191 **콤리 뱅크에 RI 역대 회장 문서를 보관할 것** (2010년 6월 이사회 결정 200)

결의안 내용: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91은 폴 해리스 부처가 시카고에서 거주했던 주택, '콤리 뱅크'를 RI 역대 회장들의 문서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무총장은 RI가 이미 사료들을 저장하는 보관소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 자료 보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콤리 뱅크를 새로운 사료 보관소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금 투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결정: 규정심의회 결의안 10-191, "콤리 뱅크에 RI 역대 회장 문서를 보관할 것"에 대해, RI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RI 사료 보관에 관심을 갖고 본 결의안을 제안해 준 미국, 캘리포니아, San Jose Sunrise 로타리클럽, Salida 로타리클럽, 그리고 미국, 미시간, Delton Area 로타리클럽에 감사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콤리 뱅크를 RI 회장들의 자료 보관소로 지정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a. 새로운 장소로의 자료 이전 및 보관 등을 위해 상당한 경비가 예상된다;

    b. RI 역사 및 기록 보관 부서 내에 연구 목적으로 '역사적 자료에의 접근 및 관리'를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사무총장에게 폴 및 진 해리스 홈 재단과 협력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역사적인 기념물의 복제품들이 콤리 뱅크에 전시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볼 것을 요청한다.